

# **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의안 번호	161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14. 01.  
발 의 자: 의회운영위원회

## **1. 제안이유**

-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 중 부서 신설에 따라 창조정책담당관과 조정경기장관리소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.

## **2. 주요내용**

-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 중 창조정책담당관과 조정경기장관리소를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.  
(안 제3조제2항제2호나목~바목)

## **3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62조**

## **4. 입법예고 : 해당없음**

## **5. 기타 참고자료 : 없음**

충주시 조례 제 호

## **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“안전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”을 “창조정책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“문화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”을 “안전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라목 중 “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”을 “문화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마목 중 “박물관, 공공시설관리소, 시립도서관, 장묘시설관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”을 “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바목을 “장묘시설관리소, 충주시립도서관, 공공시설관리소, 박물관, 조정경기장관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”으로 신설한다.

### 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 략)</li> <li>2. 총무위원회</li> </ol> <p>    가. 홍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    나. 안전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    다. 문화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    라.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    마. 박물관, 공공시설관리소, 시립도서관,         장묘시설관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총무위원회</li> </ol> <p>    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    나. <u>창조정책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    다. <u>안전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    라. <u>문화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    마. <u>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<u>바. 장묘시설관리소, 충주시립도서관,     공공시설관리소, 박물관, 조정경기장     관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

## 관 계 법령 발췌

### 지방자치법

제62조 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